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明會
印刷人 金明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營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郵遞局 137號

(非賣品)
이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圓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
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資憲大夫禮曹判書兼藝文館
大提學 金 燦 謹狀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
贊成 金載贊

男兒一生不須傷
死我皇明更有光
力戰關河誠皎日
罵賊鋒刃氣凌霜
江淮○○伊誰贊
宇宙聲名大義揚
勤惠精忠述錄後
思杯蕉○益芬芳

남아 한번 죽음이 아주 죽
음이 아니로다. 죽어서 화
국대명 나라의 빛이 다시
났네. 칼에 맞어도 풀림 없
이 적을 꾸짖고. 몸을 죽유
에 던지니, 우주간에 대의
를 날렸네. 충신의 문을 세
우고, 청사에 기록한 후에.
국운을 일으키는 제사 술이 더
욱 향기롭도다.

資憲大夫吏曹判書 曹鳳振
輓
蕞爾成都抗驕虜
大明一老有輝光
一身殉國臨天日
百世扶綱凜雪霜
聖代褒忠恩禮重
故家連誼義聲揚
感公誠孝損都懷
椒醕齊明更有芳

1986年度定期總會開催公告

一九八六年度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無漏
參席하시기 바라오며, 別途 個別通知는 一切 省略하오니
諒知하시고 隣近 宗親과 相互連絡하시와 많이 參席하시
도록 하여 주시기 仰望하나이다.

- 一、日時: 一九八六年 四月 二十七日(日)
午前十一時 正刻~午後二時까지
二、場所: 東大門區 忘憂一洞 二〇七-二
龍宮갈비집 (略圖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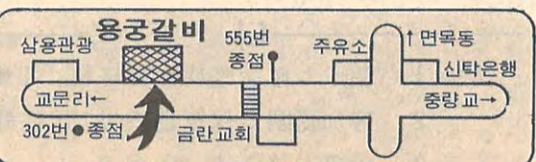
電話: 四九二一〇一一 四九三〇一一二

市内버스便
302 (종점)
555 (종점)
165-1
166-1
166-1
166-1
55

※市内버스 忘憂里 終點 育교 앞에 下車,
금란教會 맞은편
상봉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當우리
쪽으로 도로 10분거리

- 三、案件: 1. 一九八五年度 決算報告의 件
2. 一九八六年度 豫算審議의 件
3. 大宗會定款改正의 件
4. 其他事項

四、會費: 五千元(通常會費 二千元 包含)
晝食 및 紀念品 提供
一九八五年 四月 十五日
會長 金明會 白



公諡狀(譯)

按廉使公派大宗會長

傍孫 在 晚 譯

公의諡는 諡이오, 字는 汝潤이니, 安東人이라, 高麗國 萬古忠臣 梧隱 按廉使公諡士廉의 九代孫이시다.
皇明 崇禎 丙子(李朝仁祖 14...一六三六)에 淸의 虜兵이 우리 나라로 쳐들어 오니, 公께서는 成川府使로 敵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으나, 積과 對항하여 꾸짖기 마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적의 칼날에 몸을 버렸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閔西(平安道)地方의 數十州에서 오직 公한분만이 우리 나라의 顏常山(안록산)의 亂에 抗辯殉節한 顏果卿에 비유이 되었었다.
처음에 公이 府에 있을 때, 諜報를 듣고, 곧바로 官兵을 단속하여 慈母城으로 달려가서, 巡察使 洪命孝에게 引繼하고 즉시 義兵을 倡募하여 賊兵이 들어 오는 길을 차단하여 秩序를 깨뜨리고, 亂起하는 者를 막고자 할 때, 창졸간에 人心이 무너져서 收拾할 수가 없었다. 公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에게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죽음으로 씨의 리에 따르라.」고 하였다.
이 때, 公의 아들들은 아직 어리석고, 사위 金益勳(沙溪 金長生의 孫子)은 甥館(사위)의 居處)에 있으면서 公에게 하는 말이 「敵勢를 당할 수 없

通訓大夫成川都護府成川鎭兵馬節度使兼春秋館編修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總府都總管 諡愍肅金 瑄諡狀

으니 차라리 家族을 데리고山中으로 들어가 잠시 피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公은 「몸만 살겠다고 하는 일은 不可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賊의 大軍이 肉迫해 오게되자, 公이 衆人에게 일러 말하기를 「賊이 取하고 저하는것은 내 몸인지라, 나는 義에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서 無益한 죽음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이 때 婿即 金公이 公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公은 굳이 사양하고 일어난 것을 拒否하였고, 심지어 公을 업고 달아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公이 앞까지 거절하는 동안에 적의 무리가 다가와서, 칼로 위협하면서 降伏하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公은 크게 怒하여 큰 소리로 적을 꾸짖다가 마침내 迫害를 당했으나, 그때가 바로 丁丑年 正月五日이었다.
巡察使 洪命孝가 公이 遇害된 事實을 듣고 側傳(몸소 부리는 종)을 보내서 屍體를 가져다 殮하고, 서울로 運柩한 때, 金化郡에 이르니, 縣宰(원)는 이미 殉節하였고 本道에 長官이 없어서, 公의 功績을 上聞케 하지 못하였으니, 公의 諸子가 차차 長成함에 따라, 비로소 上啓하여 그 때 狀況을 두루 알리었으니, 顯門을 旌하였는데, 그 후, 甲辰년에는 權臣 許積이 黨嫌으로 公의 旌門을 쓰러뜨려 異災의 廟가 有司에게 覆壓한 것을 命하고, 野塘 金南重과, 靑湖 李一相等의 前後 禮曹가 그

事實을 밝혀서 贈官과 旌閭하기를 請하여 드디어 吏曹判書를 贈하고 「忠臣」二字로 그一事로 그치었으니 이는 대개 許積이 黨爭關係로 公의 諸子로 더불어 틈이 생기어서 怒心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 때 南谷 鄭知和 左相이 司寇에 能하여, 諸子의 말에 속임이 없음을 判斷했으니, 許積의 勢力이 硬張되어 伸冤되지 못하였고, 庚申年에 이르러서 許積이 伏誅됨으로, 諸子가 다시 前事를 告하여 該曹에 下啓되니, 該曹에서는 大臣에게 請議함에 文忠公 金鼎重이 그 일에 대한 重任을 맡아, 다시 成川府 軍民에게 나가 調査하여 그仔細한 事實을 確認하였고 또 調查로 인해서 邑妓 金玉同이 殉節한 參驗으로 밝혀졌는데, 府民의 老少가 다 말하기를 「公이 賊을山下에서 만났을 때, 避兵하여山上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 公께서 손에 돌을 들고, 賊을 치던것과 金玉同이 치마로 얼굴을 가리우고, 絶壁에서 떨어져 죽는것을 보았다.」고 한出一口로 말함으로 그 調査文書를 具上하여 下命에 따라, 旌門을 復設하고 金玉同의 旌閭도 並設하였다.
아! 公의 忠節은 可以日月로 더불어 빛을 가지런히 했다.
不幸이도 黨爭으로 인해서 남을 해침이 이와 같았으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마땅히 빛나게 사적을 짓고 밝히어 두노라.

장하도다. 아말하고 교만한 적에 대항하니, 대명이 이 미 되었으나 다시 빛이 났네. 일신은 순국하여 임종하는 날에, 백세의 강상을 불멸의 절의가 서릿발 같이 매웠도다. 성대에 표충한 국인이 무거웠고. 옛집에 시호가 내리어, 대의를 더 날리니. 公의 忠성에 느껴어 몸을 버림이, 매섭게 찬네. 좋은 술로 제사하니, 다시 아름다운음이 있도다.
墓碣文 渴
尤庵 宋時烈 撰
修撰 金鎮商 書
判書 金鎮奎 篆

大宗會報發行減縮

大宗會報는 定款 第4條 3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하고, 通常會費 年間 2千圓 以上을 納付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한다는 規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現況을 볼 때, 大多數의 宗人들이 通常會費를 拂入하지 아니하여, 大宗會에서 樹立한 事業計劃에 莫大한 蹉跌이 招來될 뿐 아니라, 「會費未納者에 對하여는 會報發送을 中斷하라.」는 宗論에 依하여, 不得已 發行部數를 大幅 減縮하여 會費未納 宗親에게는 發送을 中止할 方針이오니 諒知하시고 오는 6月末日까지는 빠짐없이 拂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世祖후비라이像



(前号에서 계속)
— 왕자(王者) 일본)의 나라는 만나라와 수교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다. 고려와 짐(朕)은 이미 한 집안이 되었다. 일본나라는 실로 국경이 인접하여 있다. 그러므로 일찌기 수신사(修信使)를 보내서 수호(修好)하고자 하는데, 장지리(疆場之吏) 일본 태宰府官吏)들이 가로막고, 통(通)해 주지 않았다. 부로(俘虜)로 잡아온 두사람(塔二郎과 彌三郎)은 유사(有司)에게 명령하여 위무(慰撫)하여, 첩서(牒書)를 휴대시켜, 돌려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다. 계속 통문(通問)코자 하는데, 고려 권신(權臣) 임연(林衍)이 난(亂)을 일으켜 지장이 생겨서, 부득이 할 수 없었다. 왕(王) 일본)도 또 이 일로 인하여 사자를 보내지 못한 것인가. 또는 이미 사자를 파견하였는데도 중도에서 길이 막혀서 그런 것인가도 모르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본은 옛부터 예의를 잘 아는 나라로 일컬어 왔다. 왕(王) 일본)의 군신(君臣)들은, 어찌 생각지 않고 감히 제 마음대로 하는가. 최근 이미 임연(林衍)을 멸(滅)하고 고려 왕위(王位)를 복귀시키고, 고려 백성들을 안도(安堵)시켰다. 특히 소중대부비서감(小中大夫秘書監) 조양필(趙良弼)에 명(命)하여 국신사(國信使)로 삼아, 첩서(牒書)를 휴대시켜 파견한다. 만일 사자를 시켜 우리가 보낸 국신사와 같이 오게 한다

면, 친인선린(親仁善隣),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것을 유예(猶豫)하여, 군사를 사용하든 경우에 이르는 것을 그 누가 좋아할 것인가. 왕(王) 일본)께서, 그 뜻을 잘 살피 주기 바란다.

원종은 조서(詔書)를 읽고 난 후 그것을 머리위에까지 높이 받들어 추켜올린 후에, 다시 조서(詔書)의 상자에 넣었다. 잠시동안 만일로 분주하여 완전히 읽어버리고 있던 빛장이가, 상대방은 읽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돌연히 틀림없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임연(林衍)의 폐립사건(廢立事件), 최탄(崔坦)의 반란(叛亂), 서해복계(西海北界)의 내부(內附), 몽구도군(軍)의 진주(進駐), 도렌카군(軍)의 입국(入國), 삼별초(三別抄)의 반란(叛亂), 환도(還都) — 지나간 해부터 금년에 걸쳐 심한 파도가 밀어 닦쳐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한 풍파가 있는 다음, 이번에는 그야말로 진짜 파도가 닦쳐온 것 같아, 진실로 별다른 하나의 큰 파도가 닦쳐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원종은 조서(詔書)가 머나먼 것을 기다렸다가 그 좌석에서 시종(侍從)하고 있던 이장용(李藏用)에게 조서(詔書)를 건네주었다. 이장용(李藏用)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조서를 끝냈다.

이장용(李藏用)은 그것을 읽고 나자, 불현듯이 세조 후비라이를 절러버리고 싶은 맹렬한 생각이 들었다. 세조(世祖)를 이 지상(地上)에서 살(抹殺)하여 버리는 이외에는 어떠한 처지도 생각할 수 없다는 답답한 심정이었다. 절

기서 표정을 굳게 하였다. 「고려는 고려로서 일본에 사자를 보내는 일입니다. 몽사(蒙使)가 일본에 파견되기 전에 여기에서 사자(使者)를 일 본에 먼저 보내서, 일본의 위정자(爲政者)들에게, 이번의 몽사파견(蒙使派遣)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조의 결의(決意)가 어떠한 것이라든가, 몽고의 국력이 어떠한 것이라든가, 이것을 일본이 안다면, 일본도 또 무모한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장용(李藏用)은 생각하옵내다, 이것이 고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하루 속히 삼별초의 난(亂)을 평정(平定)할 것, 이것이 두가지 삼별초(三別抄)군사들의 심사(心事)는 동정할만한 데가 있지만, 국가 중차대한 이때에 난을 일으킨다는 것은 국가에 원수(仇)를 지게 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몽고의 병력을 빌리지 않고 평정할 수 없다면, 몽고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합니다. 요는 하루빨리 내란을 없애는 일입니다. 나라의 내부가 어지러워서야 어찌 외환(外患)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서(詔書)에 의하면 몽고의 대군이 세 장수의 지휘하에 이 나라에 들어 올리고 있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저지할 수단은 없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주둔할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들의 부대가 주둔하고, 토착(土着)하는 일입니다. 이것만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책(方策)을 신(臣)은 알지 못합니다. 내란을 하루 빨리 진정시키고, 일본 정토(征討)의 계획을 없애는 이외에는, 주둔의 불안에서 풀려날 때는 오지 않습니다.」

이장용은 말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

음이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장용은 그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 하신 후에 이 일을 황제(世宗)에게 말씀 올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용은 말하였다. 다음 지원(至元) 8년(서기 1271년) 5월 5일, 원종은 이장용(李藏用)을 관(官)에서 면직(免職)시켰다. 부하는 이장용을 조열(朝列)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명(使命)을 가지고 고려에 들어온 것인데, 원종(元宗)로서도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12일 부하는 몽고에 돌아가기 위하여 개경을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와 엇갈리게 지난 해 연말에 내려온 조서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 보낸 국신사 조양필(趙良弼)과, 구린지 왕국창(王國昌), 홍다구(洪茶丘) 등 세 사람의 몽장(蒙將)이 2천의 군사를 인솔하고 개경에 들어왔다. 원종과 가진(家臣)들은 수도(首都) 개경의 북교(北郊)까지 나와서, 몽고에서 오는 일행을 맞이하였다.

개경은 몽고병으로 가득차 있었다. 도렌카의 뒤를 인계 받은 아해(阿海)의 인솔 병단(兵團) 외에, 새로 들어온 몽고병들에 의하여 작은 민가(民家)란 민가는 전부 점령당하고 말았다. 원종으로서도 환도(還都)를 감시하기 위하여 입국한 도렌카군(軍)이 환도가 끝났어도, 그냥 머물러 있는 데 대하여, 의의를 하고 싶었으나, 그의 통솔자도 렌카가 아해(阿海)와 교제(交替)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병단(兵團)의 성격(性格)이 완전히 전해지고 말았다. 이제 정말로 삼별초(三別抄) 토벌병단(討伐兵團)이 되어버렸고, 3천 병력의 삼분의 일이 전선에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개경에 잔류하고 있었다. 전선부와 개경에 머물러 있는 부대 사이에 약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井上靖 著
(12) 金備會 譯

말하고서 제일 최후의 일은,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했어도 그것은 이미 아무 소용없을지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강(強)하였다. 세조 후비라이가 제일 크게 바라고 있는 것은 몽병(蒙兵)을 영구적으로 주둔부대로서 고려에 남겨 두겠다는 것은 틀림없었다. 일본에 파견한 국사(國使)가 귀국할 때까지 몽고의 대군을 반도의 남부에 주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필요도 생 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신사파견(國信使派遣)에 의한 진주(進駐)는 단순한 구실(口實) 뿐이었고, 그 노리는 것은 대군(大軍)을 고려에 투입(投入)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것을 영구적인 주둔부대로 하기 위하여 그들 로 하여금 둔전(屯田)시키고 거기에서 하여 사소한 부담도 고려에는 끼치지 않는다는 형 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12월 2일에, 환도(還都) 문제와 삼별초(三別抄)의 난(亂)에 대한 사정을 아뢰기 위하여 몽고에 입조하였던 태자(太子) 심(諱)이 귀국하였다. 심(諱)과 같이 몽고단사관(蒙古斷事官) 부하가 개경에 들어왔는데, 부하는 원종을 알현(謁見)하자, 그 자리에서, 「임연(林衍)의 폐립(廢立)의 때에, 모사(謀事)에 참여하였던 자가 아직도 조정에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하고, 무엇으로서 악(惡)을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분명히 이장용(李藏用)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다. 원종(元宗)은 묵묵히 있었다. 그 자리에 이장용이 있었는데, 이장용은 자기에게 절러죽이고 싶다고 생 각한 세조로부터, 반대로 단도(斷刀)를 절러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죽어야 할 것이라고 황제는 신(臣)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

음이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장용은 그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 하신 후에 이 일을 황제(世宗)에게 말씀 올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용은 말하였다. 다음 지원(至元) 8년(서기 1271년) 5월 5일, 원종은 이장용(李藏用)을 관(官)에서 면직(免職)시켰다. 부하는 이장용을 조열(朝列)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명(使命)을 가지고 고려에 들어온 것인데, 원종(元宗)로서도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12일 부하는 몽고에 돌아가기 위하여 개경을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와 엇갈리게 지난 해 연말에 내려온 조서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 보낸 국신사 조양필(趙良弼)과, 구린지 왕국창(王國昌), 홍다구(洪茶丘) 등 세 사람의 몽장(蒙將)이 2천의 군사를 인솔하고 개경에 들어왔다. 원종과 가진(家臣)들은 수도(首都) 개경의 북교(北郊)까지 나와서, 몽고에서 오는 일행을 맞이하였다.

개경은 몽고병으로 가득차 있었다. 도렌카의 뒤를 인계 받은 아해(阿海)의 인솔 병단(兵團) 외에, 새로 들어온 몽고병들에 의하여 작은 민가(民家)란 민가는 전부 점령당하고 말았다. 원종으로서도 환도(還都)를 감시하기 위하여 입국한 도렌카군(軍)이 환도가 끝났어도, 그냥 머물러 있는 데 대하여, 의의를 하고 싶었으나, 그의 통솔자도 렌카가 아해(阿海)와 교제(交替)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병단(兵團)의 성격(性格)이 완전히 전해지고 말았다. 이제 정말로 삼별초(三別抄) 토벌병단(討伐兵團)이 되어버렸고, 3천 병력의 삼분의 일이 전선에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개경에 잔류하고 있었다. 전선부와 개경에 머물러 있는 부대 사이에 약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선(前線)으로 부터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개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개경으로부터도 몽고부대는 끊임없이 남(南)쪽으로 향하여 진발(進發)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있었다. 따라서 전선(前線)으로 부터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개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개경으로부터도 몽고부대는 끊임없이 남(南)쪽으로 향하여 진발(進發)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있었다. 따라서 전선(前線)으로 부터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개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개경으로부터도 몽고부대는 끊임없이 남(南)쪽으로 향하여 진발(進發)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있었다. 따라서 전선(前線)으로 부터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개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개경으로부터도 몽고부대는 끊임없이 남(南)쪽으로 향하여 진발(進發)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있었다. 따라서 전선(前線)으로 부터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개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개경으로부터도 몽고부대는 끊임없이 남(南)쪽으로 향하여 진발(進發)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敬順大王陵享 參祀案内

新羅金氏大宗院에서 主管奉行하는 敬順大王 春季陵享을 다음에 依하여 舉行하오니, 參祀를 希望하시는 분은 事前에 大宗會로 連絡바랍니다.

— 다 음 —

日 時.. 一九八六年 五月十一日(日)
集 合 場 所.. 鍾路二街 과고다公園 後門 앞
會 費.. 一人當 壹萬圓

※當日 往復車便과 晝食・紀念品을 提供함.

保寧郡宗親會 主催

梧隱 按廉使公의 後裔로 組織된 奉仕團인 蒼梧會에서 지난 2月 1日 부터 3日 동안, 忠南 保寧郡에서 家族教養講座를 開催하여, 盛況裡에 끝마치었다.

保寧郡內에 居住하는 宗親들의 要請에 依하여 開催된 이번 講座에는 第1日에는, 靑少年班(大・高・中學生)・第2日에는 男子班(年齡不問)・第3日에는 婦女子班으로 나누어 實施하였는데, 그 狀況은 다음과 같았다

— 다 음 —

1. 教 材: 家族教養材料 1輯
2. 參加範圍: 保寧郡內에 居住하는 宗親
3. 受講人員: 連 90 名





왜 꿀벌을 靈蟲이라 할까요?

— 그 神秘를 벗긴다 —

按廉使公派 金 鍾 勳 (동산봉침요법 연구회장)

꿀벌이 생산하는 꿀과 로얄젤리 화분 그리고 봉독(蜂毒·蜂針液)은 인류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왔으며 특히 成人病과 각종 만성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정력증강, 老化 예방에 강력한 활력소가 되는 건강식품이다.

로마法王을 起死回生시킨 로얄젤리의 神秘

1954년의 일이다. 80세가 넘는 로마法王 비오12세가 得病하여 매우 위독했을 때 주치의 가레아지 리시 박사는 주님에게 기도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法王에게 로얄젤리를 투여했다. 임종이 가까왔던 法王의 얼굴에는 생기가 되살아나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한다.

그 다음해 로마에서 열린 국제 의학대회에서 리시 박사는 이 사실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3년후 국제양봉회의가 로마에서 열렸을 때 비오12세 法王 스스로 이 회의에 참석하여 치하하고 로얄젤리의 효능에 대해 높이 평가함으로써 깊은 감명을 심어주었다.

로얄젤리의 이와같은 신비적인 물질은 현대과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지만 기적과도 같은 로얄젤리

터 12.3일 되는 젊은 일벌들의 咽頭腺(인두선)에서 분비되는 乳白色(유백색)의 乳狀物(유상물) 즉 밀크와 비슷한 분비물이다. 이 유상물은 여왕벌, 일벌, 수벌의 유충에게 부화후 3일간(전3일)은 똑 같이 먹이고 3일이 지나면 여왕벌에게만 충분한 로얄젤리를 먹이게 된다. 먹이고 자라난 여왕벌은 一生동안 産卵時期에는 로얄젤리만 먹고 산다. 부화후 3일이 지나면 일벌과 수벌의 유충에게는 화분과 꿀을 혼합한 벌떡(Bee bread)만을 먹인다.

2. 女王蜂의 성능

일벌은 암컷이지만 암컷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암컷(中性에 가까운 것)이다. 交尾(교미)도 할 수 없고 一生동안 묵묵히 일만 하다 죽어간다.

일벌의 유충을(부화후 3일까지

운반하고 화분을 꿀과 더불어 먹고 살기 때문에 위장기능이 발달된 반면 女王벌의 위는 퇴화되어 있다. 그러나 난소가 발달되어 복부가 크고 길며 체적이 일벌의 두 배 이상이나 된다.

이러한 경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女王벌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로얄젤리이다. 이 로얄젤리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은 女王벌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사의한 힘과 능력이 로얄젤리의 어떤 성분의 물질에 의해 위대한 조화를 일으키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3. 로얄젤리의 성분

로얄젤리는 명칭과는 달리 젤리(gelly) 상태가 아니라 수분 66.2%, 단백질 12.8%, 당질 15.9%,

로얄젤리



성기능부진, 갱년기 장애, 혈압조절, 수술후의 쇠약, 腺病質 등에 탁효

4. 로얄젤리의 효능

로얄젤리는 민간요법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증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연구 발표되고 있으나 과연 로얄젤리가 갖고 있는 성분중에서 어떤 성분이 어떤 종류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아직 분명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같은 총 40여종 이상의 유효성분이 조

이 나타나는 사람 등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아주 심한 편이다. 강장제로서는 로얄젤리보다 더 좋은 식품이나 약은 아마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일시적인 흥분제가 아니고 신체의 세포를 젊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정력이 왕성하게 되고 지속성이 유지된다.

로얄젤리는 水分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해 주는데 부신피질 호르몬은 다음과 같은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 염분과 水分의 대사
- 2)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 3) 신경근육기능
- 4) 성적 기능에 대한 작용
- 5) 감염이나 물리화학적 작용에 대한 저항 등 이렇게 다양하게 인체의 조직에 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로회복, 식욕증진, 증혈, 조절작용, 피부미용, 체중증가, 유아의 발육증진, 병후 산후의 조기 회복, 고혈압의 강하, 저혈압의 상승, 신경안정, 변비, 간 기능장애, 폐염, 기관지염, 측농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로얄젤리는 無公害의 완전 영양식품

로얄젤리가 완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영양가 높은 식품도 결국 農藥에 오염되어 있었음이 판명되었던 일들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으나 로얄젤리는 이 점에서 100% 안전하다.

그 이유는 꿀벌은 농약에는 정말 약한 곤충이며 사람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적은 농약이 있어도 곧 죽는다. 따라서 벌꿀, 화분, 로얄젤리, 봉침액 등에 농약 등 有害물질이 혼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로얄젤리는 완전한 무공해 영양 식품인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져 환자의 건강식품으로 임상실험하게 되었으며 매일 일정량을 장기간에 걸쳐 환자에게 먹여왔더니 여기 저기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로얄젤리는 약품으로 임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와같이 병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영양식품으로도 사용하게 된 것이다. (*)

(문의전화: 434-5864)

● 신비의 蜂産物(꿀, 로얄젤리, 화분, 蜂毒)은 神이 人類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이며, 특히 봉침과 로얄젤리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 R물질이라는 成分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인간의 난치병이 로얄젤리나 蜂毒液으로 거의 완치된다고 하여 日本에서는 「벌은 사람의 모든 고통을 구해주는 藥師仏」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가 法王을 소생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의 秘藥」으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코가사스 長壽村은 100세의 나이에도 노동을 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잉태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장수자의 대부분이 양봉가나 벌꿀을 애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로얄젤리는 女王蜂의 먹이를 말한다.

식물은 꿀벌을 매체로 하여 화분과 벌꿀을 제공하고, 꿀벌들은 체내에서 봉침액인 봉독과 로얄젤리를 분비해서 인류의 보건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神이 인류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봉침과 로얄젤리는 그 신비로운 효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그 성분중 해명되지 않고 있는 R물질이라 칭하는 성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1. 로얄젤리의 분비

로얄젤리는 일벌의 日齡 3일부

의 것) 女王벌이 될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王台속에 移虫(이충)(애벌레를 옮겨 넣어 줌)을 하여 주면 일벌들은 이 유충을 먹이기 위하여 왕대속에 로얄젤리를 넣어 준다.

이충한지 48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로얄젤리를 얻게 되고 왕대 1개에서 약 200mg~250mg의 로얄젤리를 採乳(채유)할 수 있다.

女王벌은 산란일로부터 16일만에 탄생하게 되고 일벌은 21일만에 태어난다.

일벌들은 봄에서 가을까지 꽃에서 일할 때에는 약 30일에서 4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나 女王벌은 출생해서 一生에 단 한번 교미하여 卵巢(란소)에는 수백만개의 精虫(정충)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자기 몸무게의 배나 되는 1,000개 내지 2,000개의 알을 봄에서 가을까지 거의 매일 계속해서 산란하며 약 4~5년 이상 산다.

일벌들은 꿀을 위속에 넣어서

지방질 4.6%(이중 테센산 2.3% 화분 0.9%) 등으로 꿀보다 그 성분이 더 물렁하다. 여기에다 필수아미노산류가 전부 들어있다.

이와같이 로얄젤리에는 모든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음으로써 이상적인 영양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물의 생존상 불가분의 영양분인 비타민류가 10여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비타민B군의 함량이 벌꿀보다 월등히 많고 체내에서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아세틸 코린의 양이 천연물질 중에서 가장 많다.

또 많은 미네랄류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로얄젤리에는 10하이드록시-2-데센산(10Hydroxy-d-2 decenoic acid)과 파로틴(Parotin)과 유사한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테센산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로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현저한 항암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로얄젤리에는 사람의 唾液腺(타액선)에서 분비되는 파로틴(Parotin)과 유사한 성분도 발견되었다. 파로틴은 老化를 방지하고 回春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유아의 成長과 성인의 노화방지 등 여러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西独의 베테나트 박사에 의해 로얄젤리는 이상과 같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하여 호르몬 생성 물질과 당질 아미노산 등 40여가지의 성분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직 신비에 쌓여있는 로얄젤리의 성분중에서 발견되지 않은 未知의 물질인 R물질에 더 큰 기대를 걸게 된다.

화있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들의 종합적 작용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기능 부진, 정신불안, 갱년기 장애, 혈압조절, 수술후의 쇠약, 腺病質(선병질) 등에 탁월한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확실히 신비로운 식품임에 틀림이 없다.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암환자의 寿命 연장 효과에 대해서도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때의 생로얄젤리의 복용량은 1일 5g 정도로 되어 있다.

또한 암환자의 환부위의 격통에 대해서도 로얄젤리를 복용함으로써 통증완화 또는 전연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도 한다.

로얄젤리를 장기간 복용한 후 백발이 까맣게 되었다거나 일단 폐지된 부인의 생리가 재현되었다는 사실도 있다.

이것들은 로얄젤리가 사람의 間腦視床下部(간뇌시상하부)에 작용해서 그 부위의 노화를 방지함으로써 회춘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自律神經 실조증이나 갱년기 장애, 의식장애, 반신불수에도 효력이 있다.

로얄젤리를 복용함으로써 간뇌의 작용에 의해 자율신경의 조정 효과가 증대하고 腦血管 後の 의식 장애가 회복된 예 및 뇌출혈에 의한 반신불수에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強精作用에는 로얄젤리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로얄젤리는 즉시 그 효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효능

또는 全部를 常任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20條(常任理事會)

常任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4 名과 理事會에서 選出한 理事11名으로 構成한다.

第21條(常任理事會의 權限)

常任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理事會의 委任事項
2. 獎學事業運營에 關한 事項

第五章 代議員會

第22條(代議員會)

代議員會는 會長, 副會長, 各派 會長 및 代議員으로 構成하고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會長, 副會長, 監事選出에 關한 事項.
2. 會長, 副會長, 監事中에서 缺員이 生하였을 時는 2 個月以內에 代議員會를 召集, 이를 補選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하고 會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23條(議決除斥事由)

會長, 副會長 選出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을 議決할 時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第24條(議決)

1. 理事會 및 (常任理事會 包含) 代議員會는 在籍會員過半數 出席과 出席會員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理事會(常任理事會包含) 및 代議員會의 議決權은 會議에 參席하는 다른 會員에게 그 行使를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會議開始前에 書面으로서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3. 議決事項이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25條(會期)

常任理事會는 隨時, 이를 召集하고 理事會 및 代議員會는 年1回 乃至 2回 이를 召集하되 必要에 따라 隨時 이를 召集할 수 있다.

第26條(書面決議禁止)

理事會(常任理事會 包含) 및 代議員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依할 수 없다.

第六章 獎學財團

第27條(獎學財團의 設立目的)

1. 獎學財團은 前2條에 該當하는 會員中 思想이 穩健하고 學業成績이 가장 優秀한 者를 選拔하여 獎學金을 支給, 有能한 人材를 養成, 國家社會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2. 獎學財團은 文教部 長官의 正式 認可를 얻어 運營하고자 할때는 別途 文教部 指定의 財團法人 定款에 依하여 運營되어야 한다.

3. 獎學財團運營에 對한 細部指針은 大宗會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4. 獎學財團은 어디까지나 大宗會 傘下에 두고 그 運營狀況을 理事會 및 定期總會에 이를 報告하며 大宗會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七章 執行機關

第28條(機關)

本會의 業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 部署를 두고 各部에 部長 및 幹事를 둘 수 있다.

1. 總務部
2. 組織部
3. 事業部
4. 財政部
5. 管理部
6. 編輯部

第29條(部長等의 任免)

各部의 部長 및 幹事는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但, 無報酬로 한다.

第30條(各部의 機能)

各部에서 다음 業務를 分擔 處理한다.

1. 總務部는 一般庶務 會議, 其他 他部의 職務에 屬하지 않은 一切事項
2. 組織部는 會員의 實態를 把握, 整理하고 其他組織에 關한 事項
3. 事業部는 本會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事業에 關한 事項
4. 財政部는 會計其他 財政에 關한 事項
5. 管理部는 會館 및 其他 大宗會 財産管理에 對한 事項
6. 編輯部는 前4條3項에 關한 事項

第八章 財産과 會計

第31條(財産의 區分)

本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以外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建物, 垡地, 位土, 林野等 財産
2. 基本 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3. 寄附에 依據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困難하여 理事會의 決議에 依한 것은 例外로 한다.
4. 普通財産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5. 歲計剩餘金 中 積立金

第32條(財産의 管理)

1. 第30條에 規定한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貸貸, 交換 및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拋棄를 하고자 할때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決定한다.

2. 本會가 買取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時는 遲滯없이 이를 本會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第33條(財産의 評價)

本會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評價에 依한다.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34條(財政의 調達方法)

1. 本會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本會 會員의 通常會費와 特別會費(贊助金等)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2. 本會 會員은 每年 通常會費를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3. 通常會費의 金額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이를 決定한다.

第35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 月 1 日에 始作하여 翌年 3 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九章 附則

第36條(施行日字)

本定款은 西紀 1969年 5 月 4 日 부터 施行한다.

第37條(經過規程)

本定款施行 當時 및 改正當時에 在任하는 任員은 本定款에 依하여 選出된 것으로 看做한다.

但, 現任員의 任期는 改正前 定款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38條(定款改正)

本 定款은 西紀 1986年 4 月 27 日 定期總會에서 改正 當日부터 施行한다.

定款改正案起草

이제 總會의 審議만.....

大宗會 定款은 지난 一九六九年 五月 四日 定期總會 때, 審議決定하여 至今 까지 施行해 왔읍니다.
그러나, 急速化한 宗勢로 말미암아, 業務量이 增大된 趨勢에 비추어 現行 定款의 改正이 要求되는 바, 宗論이 大作하여 去年度 定期 總會에서 定款改正이 決議되고 四月달 全國 理事會에서 十二名의 起草委員을 選出, 이제 草案의 마무리를 보게 되어, 總會에 提示하여 審議를 求할 段階에 있아오니 本報에 掲載된 案을 豫히 熟考하시어서 大宗會의 基本規則인 定款에 遺漏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提學公派 金 在 汶

永同郡 龍山面上 龍里 一九一

提學公派 金 明 錫

大邱市 壽城區 巴洞 二七一〇九
電話...〇五三一七六二一四九二五

訃告

前 大宗會 理事 書雲觀正公派 定浩氏 大人(諱 圭晟)께서 宿患으로 지난 十二月二十八日(陰十一月十七日)에 壽 八十七歲로 別世.

前 大宗會 理事 都評議公派 泰完氏 大人(諱 九鍾)께서 宿患으로 지난 二月七日(陰十二月二十九日)에 壽 九十六歲로 別世.

安東金氏大宗會定款 案

第一章 總 則

第1條(名 稱)

本會는 安東金氏大宗會라 稱한다.

第2條(會 員)

本會의 會員은 安東金氏忠烈公의 後孫으로 한다.

第3條(目 的)

本會는 會員間의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祖上의 빛난 業을 宣揚保存하며 子孫의 崇祖理念을 鼓吹昂揚함으로써 國家社會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 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先祖의 祭享, 墓所, 位土, 齋室, 遺蹟의 管理保存 및 이에 隨伴된 事業.
2. 先祖의 功勳에 對한 顯揚 事業.
3. 族譜, 花樹錄, 先祖史記, 譜鑑, 會報, 文集, 發刊等 文化 事業.
4. 會員間의 哀慶相問에 關한 事項.
5. 會員에 對한 育英事業 및 獎學事業
6. 前各項의 目的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爲한 收益事業.

第5條(事務所)

本會事務所는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洞 112-49號 安東金氏會館內에 두고 必要에 따라 地方에 宗親會를 둔다.

第二章 任 員

第6條(任 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顧問 若干人
2. 名譽會長 1人
3. 會 長 1人
4. 副 會 長 3人
但 副會長 3人中 常任副會長 1人을 둔다.
5. 理 事 50人 以內
6. 監 事 2人
7. 代 議 員 50人 以內

第7條(任員選出)

1. 顧問과 名譽會長은 學識과 德望이 높고 社會의 名望이 높은 會員 中에서 會長이 이를 推戴委嘱한다.
2. 會長은 學識德望이 높고 特히 大宗會 發展에 貢獻한 功勞가 顯著한 會員 中에서 代議員會에서 選出한다.
3. 副會長 및 監事는 會員 中에서 代議員會에서 選出한다.

4. 理事 및 代議員은 各派宗親會長 및 本部會長團 會議에서 各派別 分布數字를 勘案하여 選出한다.

但, 理事 및 代議員은 相互兼任할 수 없다. 各派宗親會長은 例外로 한다.

5. 前第7條 各項은 總會에 報告하고, 大宗會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8條(任員의 機能)

1. 顧問 및 名譽會長은 本會의 諮問에 應한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一切를 統轄하며 總會 및 理事會(常任理事會包含)와 代議員會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時는 常任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4. 常任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前4條에 規定한 業務를 處理한다.

5. 前4條에 規定한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常任副會長 밑에 若干名의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事務職員은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6.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되어 會務處理에 參與한다.

7. 監事는 本會의 會計 및 業務에 對한 監査를 하여 그 結果를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8. 代議員은 會長, 副會長, 監事의 選出 및 이의 補選에 關한 業務를 處理한다.

第9條(報 酬)

1. 常任副會長과 常勤職員은 一定한 報酬를 支給하여야 한다.

2. 報酬(人件費)는 會長團에서 決定하여 理事會의 審議를 거친다.

第10條(任員의 任期)

1. 會長, 副會長, 理事 및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任期滿了後 10日 以內에 選出하여 總會에 報告하고 大宗會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任期滿了日은 滿了되는 해의 3月末日로 한다.

2. 補選에 依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3. 任員의 任期가 滿了되었다 하더라도 後任者가 選任決定될 때까지는 그 任期가 延長된다.

第三章 總 會

第11條(總 會)

定期總會는 每年4月中에 이를 召集한다. 但, 萬不得已한 境遇가 있을時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12條(臨時總會)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常任理事會의 決議 또는 會員50人 以上の 要求가 있을時 이를 召集한다.

第13條(召 集)

總會 및 理事會(常任理事會包含)와 代議員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4條(召集方法)

1. 總會는 이를 적어도 10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大宗會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但, 個別通知는 省略한다.

2. 理事會(常任理事會包含) 및 代議員會를 召集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會議7日 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理事 및 代議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5條(總會의 機能)

總會에서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定款改正에 對한 承認
2. 豫算 및 決算審議에 對한 事項
3. 任員選出 및 補選에 關한 事項
4.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5. 常任理事會의 議決로서 附議된 事項

第16條(定足數)

總會는 會員 100名 以上の 出席으로 開會하여 出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四章 理 事 會

第17條(構 成)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各派宗親會長 및 理事로서 構成한다.

第18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에서 다음 事項을 議決하여 總會의 承認 및 報告한다.

1.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의 審議事項
3. 代議員會의 機能에 關한 事項
4. 資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5. 借入金 및 貸與金處理에 關한 事項
6. 各種 規程制定 및 改定에 關한 事項
7. 獎學事業運營에 關한 事項
8.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9. 總會에서 議決된 事項의 執行에 關한 事項

10. 總會의 召集을 기다리기 어려울時 總會에서 議決을 要하는 事項

第19條(理事會의 權限委任)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그 權限의 一部

獎學基金寄託者

五拾萬圓 翼元公派 明會 (會長)
五拾萬圓 書雲觀正公派宗中
拾萬圓 按廉使公派 良默 (汝矣島)

壹萬圓 提學公派 明錫 (大邱)
壹萬圓 提學公派 在汶 (永同)
都評議公派 泰弘 (日本神戶)
九萬六千六百八拾圓 (日貨貳萬圓)

五萬圓 郡事公派內洞門中 (康津)
五萬圓 書雲觀正公派宗中 (서울)
參萬圓 都評議公派 昌信 (忠正路)



萬里異域에서 저희 兄弟들은 大宗會의 無窮한 發展과 宗親間의 親睦을 위해 寄與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神戶市 長田區 林山町 七一九二
電話: 〇七八一六三一五三三三

金 泰 弘

京都府 宇治市 伊勢田町 砂田
電話: 〇七七五二〇一三七二七

醫學博士 金 泰 恒

京都市 上京區 鞍馬口 大宮西入南
電話: 〇七五一四四一七七二〇

會 長 金 泰 成
(都評議公派)

在日安東金氏宗親會

宗門의 現住所(2)

燕岐郡 全東面 典書公派 門中 編

天安에서 南으로 約 五十里 地點인 燕岐郡 全義面까지 가 는 車窓밖은 그런대로 壯觀이 었다.

남은 鋪裝道路의 위를 달리 는 車의 振動은 多少間의 不快感이 없는바도 아니었지 만, 능수버들이나, 푸라나나 스-街路樹- 등의 整列이 綠陰의 洞屈을 聯想케 할 때, 落葉期 旅行의 아쉬움을 느끼 게 한다.

車는 狹谷으로 들어 가니, 左右의 山은 漸漸 가가 위치면서, 四方의 山勢는 野山으로 펼쳐진 天安地方과는 달리 峻雄한 容態로 이 고장 을 지켜주는 느낌이다.

十餘分! 天安에서 三十分! 後에 車는 全義面所在地에 到着된다. 面所在地치고는 제법 繁華한 곳이다. 天安과 鳥致院의 中間地點에 位置한 全義는, 서울-大田間을 往復하 는 定期버스와 天安에서 大田 이나, 公州間을 往復하는 市外버스들이 連絡不絶하고, 市 民交通에서 運行하는 短距離 버스는 어느 山谷의 마을까지 도 빠짐없이 찾아 다닌다. 交通은 그런대로 便利한 곳이다.

이 全義에서 安東金氏가 世居하는 全東面 陽谷里까지 는 公州道路를 거슬러 가거 約 六 km 地點, 全義에서 이어진 이 道路는 狹小하고, 아직 非鋪裝이다. 하루에 몇 차례씩 定期 버스가 通過한다고는 하나 道路事情에 따라 運休할 때도 많다는 것이 이곳 住民들의 不平이다.

이 地域은 元來 百濟의 領域으로 仇知縣이라 하였는데, 新羅때는 金池라 하여서 大麗(木川)郡의 屬縣이 되었다. 또 高麗때는 全義로 고쳐서 淸州에 예속시켰고, 李太祖 四年에는 監務를 두었다가, 太宗 十四年에 燕岐縣을 합쳐서 全岐縣이라 하다가 다시 全義와 燕岐로 還元한 地域이다.

이 全義縣에 安東金氏가 定着하기는 李太祖가 開國(三九三)한 直後이었다.

忠烈公의 玄孫인 諱成牧은 高麗末葉에 工曹典書(李朝의 判書와 같은)을 지내었고, 아들 休는 恭愍王朝에 벼슬이 檢校近侍의 要職에 있었으며, 일찍이 圃隱 鄭夢周에게 學文을 배워 爲國忠節의 思想이 뿌리깊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一三九三年에 李成桂가 革命으로 王權을 잡고 公을 護軍으로 除授하였으나, 親老를 理由로 해서, 雲住山 밑에 隱遁하여 田園生活를 하 였고, 이어서 李成桂는 다시 嘉善檢校와 漢城府判尹으로 불렀으나 끝내 辭讓하고 孝親과 教子를業으로 삼아, 鄉黨의 尊敬을 받아왔고, 號를 學堂이라 하였다.

檢校公이 이 고을에 와서 地勢의 形成을 말한 때, **三峰聳秀圍平野 二水奔流繞故城**

이라 하였으니, 셋봉오리 높 이 솟아, 평야를 에워싸고, 두 강물이 흘러서 옛 성을 감싸 네"라는 뜻이다. 즉, 栗峴과 高山이 雲住山과 더불어 崋山을 形成하였고 栗峴에 根源을 둔, 東便의 高麗院川과 公州의 境界인 芒峴에서 흘러오 는 生拙川이 西南部를 에워싸 고 있으니 可히 隱士의 살만 한 곳이라는 뜻이다.

檢校公이 二子를 두었는데, 益精, 益廉이라, 益精公이 李 祖太祖五年(一三九六·丙子)에 비로서 文科에 壯元及第하 여 吏曹參判을 지냈고 益廉公 또한 太宗八年(一四〇八·戊子)에 文科에 及第하여 吏曹 正郎을 지냈는데, 두兄弟는 親睦에 모두 三年동안 廬墓를 지켜 孝道를 다함으로 해서 旌閭를 세웠고, 正郎公의 子 漢과 參判公 號雲庵의 孫子 壽寧의 叔姪이 端宗元年(一四五三·癸酉)에 文科에 同榜合格하여 漢公은 成均直講을 지내고, 壽寧公은 湖堂(讀書堂)을 거쳐 大提學에 이르렀 으며, 壽寧公은 成宗二

年(一四七一)에는 佐理功臣에 策勳되어, 福昌君에 封해지고 諡號는 文悼公이니, 全義의 安東金氏는 湖西의 名家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 때부터 大多數의 後孫들은 狹隘한 地域을 벗어나, 또는 仕路에서 任地에 머물기도 하고, 또는 子孫 扶植의 터전을 찾아 移住하게 되었는데, 慶南의 昌寧과 慶北의 達城·京畿의 華城·平澤, 그리고 서울의 鉢山洞等 地에서 門戶를 열고 있고 이 곳, 全東面 陽谷里의 安東金氏, 全義面 新興里(모두가 五里程度의 距離)一圓에서 六百年동안 世居하면서 祖上의 古基를 지키고 先塋에 香火를 올리면서 살아온, 二百三十餘世의 後孫들은 參判公(諱益精)의 第二子 進士公(諱洞)의 後孫이다.

進士公의 아들 富寧은 副司直으로 司導寺正에 追贈되고, 그의 아들 龜年은 左部將으로 刑曹參議에 追贈되었다.

部將公이 五男을 두었는데, 師秀·師俊·師哲公의 後孫이 이곳에 世居하고 師敏公의 後孫은 主로 華城地方에 살고 있다.

師秀公이 司憲府 監察과 懷德縣監을 지냈고 戶曹參判에 追贈되었는데, 師俊公은 號가 思庵인데, 孝誠이 至極하여 親患中에 蓮根을 願하였으나, 母가 嚴冬雪寒이라, 어름 위 에 얼드러 七晝夜를 울었더니 어름 속에서 忽然히 蓮根이 솟아 나와, 이를 드시게 하였 으니 病이 낫는 奇蹟이 있어, 士林의 薦擧로 旌門이 세워졌 고, 師哲公은 牧使를 歷任하 였다.

縣監公의 아들 鎮은 明宗四 年(一五四九·己酉)에 文科로 及第하고 明宗十一年(一五五 六·丙辰)에 重試에合格해서 十二州의 牧使와 四道의 節度使를 歷任, 京畿水禦使를 지 냈으며, 宣祖十三年(一五八〇·庚辰)에는 承旨公 億齡(翼

元公派)·佐郎公 齊賢(提學公 派)等諸公과 더불어 『安東 金氏 姓譜』를 始刊했으니, 우 리 安東金氏 最初의 族譜이며, 이를 庚辰譜라 한다.

또 牧使公(諱師哲)의 孫子 濟鼎은 文科에 及第하여 五十 歲에, 後金의 捕虜가 되었던 姜弘立이 仁祖五年(一六二七 ·丁卯)에 金나라의 軍隊와 함께 鴨綠江을 건너왔다. 이 때 公이 麟山防禦使로서 敵을 맞아 力戰하다가 마침내 戰死 하였다. 胡亂이 講和로 끝나 고, 仁祖께서는 致祭文을 보 내서 祭祀를 지내고, 그 妻子 를 도왔으며 祭田을 下賜하였 고, 英祖大王은 兵曹 參議를 追贈하여, 忠莊公의 諡號를 내리고 旌門을 세웠다.

그 後로 全義의 安東金氏는 忠良의 家門이 되고 武官의 班列에서 제되어 燦爛한 門戶를 지켜왔다.

現在 全東面의 門中은 勿論 伯派는 아니다. 그러나, 六百 年동안 故歷을 지키고, 列先 祖의 墳塋을 守護하였기에 典 書公派의 모든 宗事는 이곳을 本據地로 삼는다.

每年 陰十月初丁日이 되면 掌令公 諱 逸의 塋所와 典書 公의 祭享이 雲住山 墓庭에서 舉行되고 學堂里 齋舍에서 八 名의 有司가 運營한 年間의 財政收支에 對한 決算이 報告 되며, 次年度 事業計劃을 宗 論에 依해 樹立한다.

有司는 各地域別로 推薦에 依해서 任命되고, 指令된 有 司는 任期동안 會長(都司)의 指示에 따라 宗事를 遂行 할 義務를 지니게 되는. 同時 에, 子孫된 持持로 義務를 다 하는 榮光을 느끼게 된다.

六百年間 世居한 全東門中 은 全東面에서도 동떨어진 僻 地山狹이나, 陽地바른 南向의 村落들로 土地는 肥沃하고, 산 이 깊고 森林이 茂盛해서 早 이 飢고 旱해도 水利는 天惠의 德을 받으며, 田作으로는 年 收나 葉煙草의 耕作이 生産의 全部인데, 그러나 그런대 로 生活는 豊饒롭고, 옛부터 凶饉의 差異가 없었다는 것이 六百年을 世居한 原因의 하나 인지도 모른다.

陽谷里 道路邊에서 鴨谷(安 山)로 들어가는 右側 丘陵위 에는 말끔히 丹裝된 旌閭閣이 있다. 이는 李朝肅宗 때, 이 곳에 살았던 贈司僕寺正公(諱 璵)의 夫人 南陽洪氏의 烈行 을 기리는 旌門인데, 夫人은 男便의 病이 惡化되자 마침내 妊娠中이라, 俗言에 "男便의 病中에 妊娠하면 病에 害를 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끝내는 飲毒으로 自絶하고 이 로서 寺正公의 病患은 自然히 回轉되어 六十六歲의 壽를 누 렸고, 이事實이 朝廷에 알려 져 旌門을 지어 後世의 鑑으로 삼았다.

旌閭閣 맞은편에는 達城國 民學校가 있고 校庭에는 前面 長泰一氏의 功績碑가 서 있 다. 泰一氏는 達田里 胎生으로, 일찍이 日本 땅에서 勤儉節約 으로 蓄財한 돈과 多少의 宗 財로 이곳에 國民學校를 建 立하였으니 이로써 六 km의 距 離를 通學하는 學童들의 苦로 움을 없애었고, 이 僻村에서 教育의 產室이요, 發展의 基 盤이 되었다.

泰一氏는 歸國後에 三十二 年間이나, 典書公派 會長으로 서 爲先事業과 族親間의 親睦 에 盡力하여 왔다.

이제는 華城 諸岐에 사는 正教氏가 會長의 所任을 맡 아 宗務에 臨하고 있고 이 全 東門中의 일은 宗孫 德會氏 를 비롯해서 壽會氏와 景會 氏가 主幹하면서 有司들과 같 이 宗事를 알뜰히 하고 있다.

(元榮記)

消 息

- ★日本 石川島 造船工業 株式會社 品質管理部長職에 勤務하는 在日宗親 泰煥(都評議公派)氏는 지난 해 10月, 科學技術處 招請, 科學技術者 母國訪問團의 一員으로 來韓, 11月1日에는 大田市 儒城觀光호텔에서 『化學PLANT機械의 品質管理』란 論題로 2時間에 걸쳐, 流暢한 우리말로 講義하였다.
- ★翼元公派宗會에서는 지난 1月18日 午後2時, 東大門區 昌信洞 派宗會事 務室에서 任員會를 開催하고,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所在 翼元公 齋舍 重建에 對한 問題로 眞摯한 討議를 하였다.
- ★大宗會 理事 會秀(都評議公派)宗親은 韓榮貿易(株) 副社長으로, 日本의 去來處인 小西六寫眞工業(株)의 新年賀詞交換會에 招請되어, 1月15日 同社 韓 永輝 社長과 함께 出國, 今日 10日에 歸國하였다. 會秀 理事는 지난 82年 陸 軍大領으로 豫編되어 入社後로 今番이 9번째의 海外 出張이었다.
- ★按廉使公派 大宗會의 傘下組織인 蒼梧會에서는 지난 1月26日(日) 淸原郡 梧倉面 慕亭里 所在 永慕齋에서 今年度 總會를 開催하였다.
- ★都評議公派 炳日氏는 지난 2月13日附로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단체 1課 長으로 轉補되었다.
- ★按廉使公派, 花山君派中 代表들은 지난 2月15日 下午2時에 大宗會中央 本部 會議室에서 會合을 갖고, 安原君(諱 公亮)墓所에 安石된 長明燈 盜難에 대한 對策과, 花山君 不祧廟 重建問題를 討議하였다.
- ★慶北 盈德 達山國民學校長 基會(正義公派)宗親은 지난 2月22日附로 停年 退職, 同學區內的 學父兄 및 有志 多數 參席裡에 同校 講堂에서 그 동안 教育界에 이바지한 功績을 기리고, 앞날의 幸運과 康寧을 祝福하는 뜻으로 退 任式을 舉行하였다.
- ★우리 나라 倫理學의 元老인 서울大學校 哲學科 教授, 泰吉(提學公派)宗親은 지난 2月22日 下午2時, 서울大學校 文化館 小劇場에서 同僚教授와 學生 等 5百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告別講演會를 가졌다.
- ★大田地方 國稅廳 間稅局長 瑞會(按廉使公派)氏는 지난 2月22日附로 永同 稅務署長으로 轉補되었다.
- ★淸州大學校 教授, 在寬(按廉使公派)宗親은 2月3~8日까지 6日間에 걸쳐 日本 東京 村松画廊에서 美術個人展을 열었다. 在寬 教授는 弘益大 美術 大學과 同大學院 出身으로서, 美術大展·韓國美術大賞展·韓佛協會展 등에서 活躍했으며, 日本展은 이번이 두번째로 韓紙에 油彩 作業을 展 作品을 선보 였다.

乙未事蹟 復享問目

○奉安할 때, 忠烈公 神座는 마땅히 한 자리를 올리고, 鶴沙 神座는 마땅히 한 자리를 물러서, 그中間을 비워 두어, 可히 兩位(楊若齋·虛白堂)를 奉安하면, 그 때의 告由 節次와 祝辭가 있을 듯 하오나, 어떻게 함이 妥當하오?
○告由時에 마땅히 酒果脯醢를 써야 할 것이지요? 焚香만 하여도 또한 無妨하오지요?
○舊位는 移座時에 告由祝文이 있을 듯 하오나, 新位에 奉安祝文 外에 告由祝文은 없는지요?
○舊位는 告由祝文을 마땅히 神座를 옮기기 전에 告하고 新位는 奉安後에 奉安祝文으로 合享의 意旨만 告하고 舊位에는 告由함이 없을 것인지요?
○當時 合享時에 新位 또한 舊位의 例에 따라, 다만 常享祝文만 쓸 것인지요?
「此外의 節次는 臨時로 發生하는 事端이 반드시 많을 것 같기에 見識이 不足하여, 一히 枚舉할 수 없으나, 그 節次를 方法에 맞도록 가르쳐 주시어, 將次 行事에 있어 未安을 免할 수 있는 道理로 하심이 如何요?

李大山別紙

○新位를 奉安할 때는, 舊位도 반드시 移動이 있을 듯 하오나, 告由의 節次가 있을 수 없을 듯 하오나, 祝辭가 있어야 할 듯 하오.
○今番의 告由는 泛常한 事體보다 좀 다르니, 酒果脯醢를 쓰는 것이 妥當할 듯 하오.
○舊位는 먼저 告由한 後에 移座하고, 神位는 奉安後에 用祝하며, 자로 告由文은 없을 듯 하오.
○舊位 告由後에 酒果는 그대로 두었다가, 新位 告由를 마치고 同時에 撤座하는 것이 可할 듯 하오.
○생각하건대, 奉安祝는 當日 祭享에만 쓰는 것이요, 常享祝는 두었다가 後日에도 쓰는 것이니, 이는 書院의 通例이나 마땅히, 卽가 秋丁을 當하였으니, 新舊位도 合享하게 되니, 祝辭를 달리 하기가 어려울 듯 하오나, 마땅히 一日前에 舊位에 告由하고 椅卓을 옮겨 모신 後에, 新位의 椅卓을 設置하고 祠板을 써서, 奉安한 다음에 이내 酒果와 奉安祝文으로 奉安하고, 明日 享禮에 是모두 常享祝를 씌어, 卽 때 다시 合享을 드리게 되오니, 生 각건대 神道계서도 和睦하고, 즐거우실 것임으로, 上丁日을 물러서, 中丁日로 하

勿溪書院日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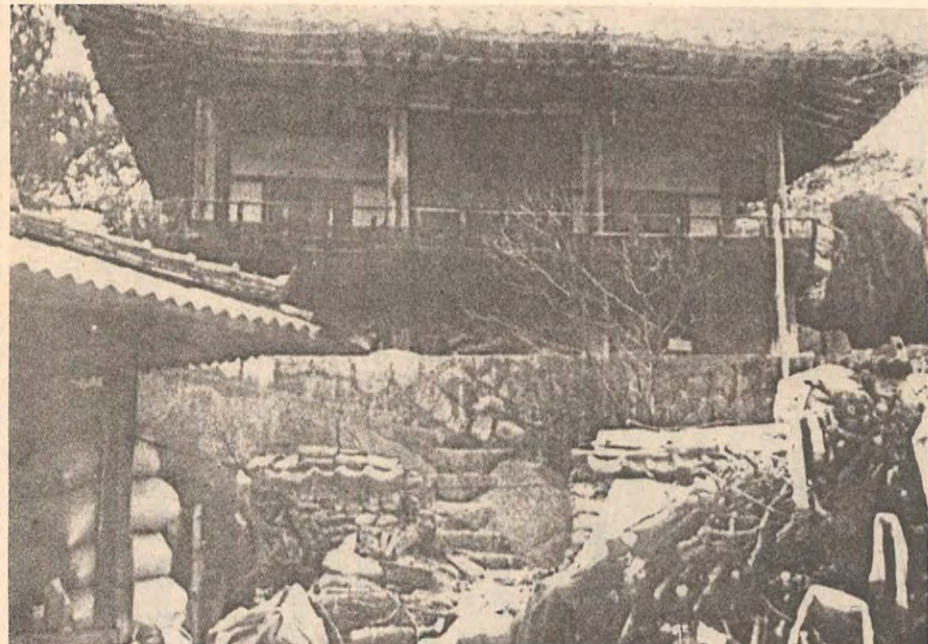
依祖事千載而足聞新因舊舊因新道百世而可仰 茲以辭德敢告厥由謹告

〔譯〕
앞드려 생각하오니, 楊若齋 金先生과, 虛白堂金先生 兩位는 金先生과, 虛白堂金先生 兩位의 指示가 있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을 輕率히 處理하오나, 그 罪가 여러 신비하게 있음나이다. 卽에 季丁日을 擇하여 楊若齋 金先生과 虛白堂 金先生의 位板을 다시 題作해서, 옛 자리에 奉安하고 祭祀를 前과 같이 올리오니, 神道와 사람은 같은 理致라, 永遠토록 樂康하시며, 交椅와 卓床을 若干 옮겼음이 悚懼하오나, 緣由를 삼가 告하나이다.

楊若齋 金先生 復享 告由文

趾美令祖 考德賢師

〔譯〕
攻績이 아름다운 祖上을 본받아, 德을 詳考함에 어진 스승이시고, 工이 하늘을 공경함에 있으니 順하고, 險함을 한결같이 지키며, 高風峻節은 百代를 두고, 밝게 빛나는 지라. 사람의 常道를 지키는 것



을 좋아하시니, 敢히 禮의 報답을 잊으리요, 卽에 祖先의 祠堂에 配享하여, 四位一體가 되시었으니, 朝家의 追配 禁令으로 因해서 敢히 國令을 어길 수 없어 神位를 埋安하게 되니, 斯文의 不幸은 勿論이오, 많은 士林의 氣概가沮喪하였으니, 禮曹에서 題示한 朝家의 眞意를 살펴보니, 當初 輕舉 責任士林 改立祠板 吾道重煥 山水增光 庶幾樂康

虛白堂 金先生 復享 奉安文

秀拔之資 宏廓之器 顯允令德 剛金直矢 世丁昏濁 明夷垂翼 道際清明 羽儀鴻陸 遺風未沫 禮合崇報 祖孫聯芳 有仙廟貌 頃有朝令 追享是禁 急於奉行 未克詳審 有舉即廢 責在章甫 春曹題牒 徹其輕舉 既往勿咎 追復敦緩 適值季丁 像設再煥 神理允愜 輿情胥悅 於千萬禩 報祀無斁

己未季秋 下丁復享

楊若齋 虛白堂 兩先生의 後裔인 金君 相繼히 事蹟과 日記一通을 나(不倭)에게 보이며, 前記하는 말이 「우리 書院의 古蹟은 遺漏됨이 많고, 前後

三別抄 (2)

보현원에 도착한 왕은 문앞에 들어서고 신하들이 장차 물러나려 할 때, 이고(李高)는 별안간에 순검관을 독촉하여, 왕이 가장 총애하는 호종문신(扈從文臣) 임종식(林宗植)과, 이복기(李復基)를 죽였으니, 이로써 歷史의인 무신의란(武臣亂)의 막이 올랐는데, 이를 정인란(庚寅亂)이라고도 하였다.

이들 무신(武臣)들이 문신(文臣)으로 부터 천대를 받을 때는 약한 존재였지만, 난(亂)을 일으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는 절대로 약하지 않았다.

그 반면에 불의의 습격을 받은 문신들은 살길을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다. 좌승선(左承宣) 김돈중(金敦中)은 소란한 틈을 타서 도망치는가 하면, 이소옹(李紹膺)의 뺨을 친, 한비(韓賴)는 임금의 앞에 차려놓은 상 밑으로 기어가 숨었지만 성급한 이고의 단칼에 목이 떨어졌다.

한편, 정중부(鄭仲夫)는 신임할 수 있는 군졸만을 뽑아, 보현원의 변을 지키게 하고, 이고·이의방 등을 데리고, 김돈중의 뒤를 따라 서울(開京)로 급거하였다.

이는 정중부로 바치는 몹시 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에 김돈중이 먼저 서울로 들어가서 태자(太子)를 모시고, 성문을 굳게 닫고, 성안에 있는 군사를 동원해서 대적해 온다면, 정중부 일당의 생명은 경각에 달리기 때문이었다.

서울로 달려간 정중부의 일당은, 대궐로 들어가서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양순정(梁純情) 등의 내직요원(內直要員)을 죽이고, 다시 태자

이와 같이 정중부를 비롯 한 무신들이 일으킨 난(亂)은 고려의 정국에서,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대변명을 일으켰다. 별안간에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잡은 무신들의 상호간에 벌어지는 정권쟁탈전은 행정에 정함이 없기에, 문신에 대한 숙청행각이 참혹하게 벌어지고, 한편으로는 무신의 무능한 정치수완에 반발하여, 혹은 하급상(下層上)의 풍조가 각처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정중부는 이렇게 반란을 주도한 만치, 그의 생 각도 달랐다. 무식하고 정치에 경험이 없는 무신만으로는 난국(難局)을 수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정중부는 어딘가 모르게 문신을 두둔하고 동정하는 편으로 마음이 흘러 갔다.

그러나, 한때, 다같이 천대받고 굶주려 온 이고나 이의방 등은 문신의 씨는 완전히 거세(去勢)하자는 기세로 나오게 되니, 정중부로서는 소극적이거나 이들의 뜻에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돌발적 사건으로 발생한 변란 이후의 무신집권사 회는 어딘가 어수선하고 질서 없는 가운데서 백성들 돌볼 사이도 없이, 서로를 경계하 면서 신변의 보호와 집권의 유지에 분방하게 되고, 한편 으로 지방에서는 삼백년간 이어 온, 고려의 전통을 깨뜨린 무신정권을 비난하고, 의종 복위의 은밀한 운동이 일어나 게 되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의무만을 강요당해 오던, 농민 이나 천민들의 반발로 기인한 반란이 각처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서, 정중부의 일 당에 의해서 의종을 비롯한 문신들의 환락과 음탕한 생활 을 일소하고 무신정권이 수립 되었으나, 삼백년간이나 흘러 온 고려사회의 문신 전통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함께 반란에 가담하 였으나, 그래도 온전한 진주 (陳俊)이나, 한순(韓順)·한 공(韓恭) 같은 장군들은 "우리가 미워한 대상은 이복기(李復基)나, 한비(韓賴) 같은 젊은 문신배 몇 사람 뿐인데, 모든 문신의 집 을 함부로 부수고, 마음대로 약탈한다는 일은 너무 심하다."

"이의방과 이고들이 제멋 대로 조신을 죽여, 그 피해 가 성질하고 신량한 사람에 게까지 미치니, 이는 의(義)에 배반되는 일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였다.

그러나, 불평을 하든 반대 인사들은 뒤잡혀 죽게 되는 등, 무신정권은 처음부터 상 호간의 대단한 압력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이같이 불평에서 오는 풍조 는 마침내 문신의 권력을 회 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하고,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였던, 김보당(金甫當)에 의 해서 반란의 함성이 폭발하 는 계기가 되었다.

김보당은 이경직(李敬直)·장순석(張純錫) 등의 힘을 빌려서, 정중부와 이의방 등 을 죽이고, 의종을 복위케 한 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키 고, 장순석 등을 거제도에 보내서, 의종의 거처를 경주 로 옮기게 하였으니, 이때가 명종三年(一一七三) 八月이 었다.

이 소문을 들은 정중부는 즉시, 장군이 의민(李義民) 과 산원(散員) 박존성(朴存城) 등을 보내서, 이를 진압케 하 였고, 이의민은 마침내 김보당을 사로잡아 서울로 보내 어 죽이게 하였는데, 이때 김보당은 고문에 못이겨 거 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

"무릇, 문신된 자로서 어느 누가 나의 계획에 가담하지 않는 자 있었겠는가?" 김보당이 이러한 말을 남 기고 죽게 되니, 문신들은 또 한번의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문신들은 거의 멸족되다시피 되었다. 이때가 바로 명종三年(一一七三) 제사(癸巳)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의종 경인(庚寅)년의 난과 합쳐서 경 계의 난(庚癸之亂)이라 한다. 이와같이 문신 학살로 말미암아 인신은 극도로 흔들리고, 혼란이 짙어졌으나, 그 런대로 혈기가 넘치고, 잔학 하기 이를 데 없는 이의민은 정주로 달려가, 곤원사(坤元寺) 북문밖으로 의종을 끌어내어, 그의 등뼈를 손으로 꺾어 죽이고, 오히려 호탕한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신 의 횡포는 결과적으로 무신정 권 형성의 주도권자인, 정중 부는 그 책임과 원성을 뒤집 어쓰게 되고, 겨우 반죽하기 시작한 무신정권임에도 불구 하고, 그들에 대한 반발은 심 지어 문신과 귀족 밑에서 발전 해 온 불사(佛寺)를 중심으로 승려들까지 끌리게 되었다. 명종四年(一一七四) 정월에 는, 귀법사(歸法寺)의 승려이 서울의 북문침입을 신호로 해 서 중광(重光)·홍호(弘護)·승려(弘化) 같은 여러 사찰의 승려(僧徒)가 들고 일어 나, 가장 잔학한 이의방을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의방은 군사들 징집해서 그들과 대적 해 싸웠는데, 결과는 사찰이 불타고, 많은 재화(財貨)와 기명(器皿)을 약탈당했다.

이의방은 마침내, 그의 형 인 이준의(李俊義)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비극까지 벌였으 나, 당시에 덕망높기로 유명 한 문극겸(文克謙)의 중재로 겨우 화해하였다.

그래도 무신정권에 대한 반 발은 그치지 않았다. 그 해 九月二日(五)에는 서경유수 (西京留守)로 있는, 병부상서 (兵部尙書) 조위종(趙位寵)이 동북 양계(東北兩界)의 여러 성을 규합하여 정토군(征討軍)을 일으키니, 자비령(慈悲嶺)이북의 수십여 성이 이에 호응하였다. 조위종은 이들 앞에서 홍분에 넘치는 목청으 로 선동하였다.

"듣진대, 요사이 개경의 중 방(重房)에서는 북계의 여 러 성이 모두 사나와졌음으 로, 모를지키 이를 정토해 야 한다고 해서, 이미 군사 를 일으켜 싸우고, 있다 하 니,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 아서 죽기보다는 병마를 합 쳐서 개경까지 진격함으로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동은 수십여 성의 성주(城主)와, 휘하 장졸들을 능히 충동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정 중부는 문하시랑(門下侍郎) 윤인침(尹麟瞻)과 장군 두경승 (杜景升)을 보내서 이들을 토 변하게 하니, 좀체로 승부가 나지 않고 일진일퇴를 거듭하 다가, 마침내 두경승의 활약 으로 조위종이 이끄는 서경 군이 점점 약세로 몰리게 되 었다.

위기에 몰린 조위종은 이듬해 정월에서 언영(徐彦寧)을 금(金)나라에 보내서 금왕(金王)에게 구원을 요청 하기에 이르렀다.

"전왕(前王)의 종은 스스로 그 위치(位)를 사양한 것이 아니요, 정중부 등이 죽 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제와서는 자비령에서 압록 강까지 이르는 수십여 성을 모두 내속(內屬)하고자 하오 니, 군사를 보내 주십시오." 조위종은 이렇게, 군사만 보내 준다면 자비령 이북의 모든 성은 당연히 금나라에 귀부하겠다는 말을 서슴치 않 고 써서 보냈다.

그러나 금나라의 세조는 이 에 응하지 않았다.

"어제, 반란군을 도와서 양 국의 우의를 그릇치겠는가?" 이렇게 말한 세조는 도리어 서 언영 등을 잡아 개경으로 압송해 보냈다.

(다음 호에 계속)

◎ 宗 告 ◎

1986年度 通常會費 納付의 件

위의 件에 대하여 本大宗會 定款 第6章 25條의 規定에 依據 宗告하오니, 來5月 末日까지 直接, 또는 同封한『우편 대제』用紙를 利用하여 納付하시기 바랍니다.

※會員의 通常會費는 大宗會에서 年間 計劃中 事業資金의 一翼으로 使用 하고 있아오니, 會員된 衿持와 義務로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納付해 주심으로써, 大宗會의 發展에 큰 貢獻이 될 것입니다.

●留意: 發送『우편대제』用紙에 住所, 姓名과 納付하는 金額을 記入, 가까운 郵遞局 窓口에 내시면 送金料는 없읍니다.

大宗會顧問



學院長 金 吉 成 (會) (翼元公派)

서울特別市 城東區 華陽洞 41-18

電話: 463-0475~6 自415-1148